#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5866

발의연월일: 2022. 6. 10.

발 의 자:김회재·김민철·박영순

양정숙・양향자・윤건영

윤재갑 • 이성만 • 정일영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여야 하 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하였음[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동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 우에 가중처벌하되 5년 내에 다시 위반하거나 10년 내에 다시 2회 이 상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누적 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의2제1항 중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나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벌칙) ①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5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나 10년 내에 다시 같 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의 벌금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신 설>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